# 보도자료

2022년 10월 27일 공보 2022-10-24호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제 목: 한국은행,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

- □ **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**는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**신용 경계 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**됨에 따라 **단기금융시장 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**하였음
  - ①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,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\*(2022년 11월 1일 시행)
    - \*은행채,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 (RP매매 대상증권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되어 있던 특수은행채를 추가로 포함)
    - o 동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 대 29조원 정도로 추정
  - ② **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단계적 인상 계획**(2023.2.1 일, 70%→80%)을 **3개월간 연기** 
    - o 동 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.5조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
  - ※ 상기 ① 및 ② 조치는 3개월 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
- □ 한편 이러한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**증권사,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RP매입**(총 6조원 수준 예상)을 **한시적으로 실시**
- □ 금번 조치들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 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  - o **동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**하는 것으로, 특히 RP매입의 경우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**현 통화정책 기** 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

( 붙임 참조 )

문의처: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 임건태, 과장 문동규 (02-759-4491, 4712)

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장 공대희, 차장 김수영 (02-759-4453, 4476)

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김준철, 과장 유영선 (02-750-6635, 6647)

공보실: Tel (02) 759-4015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bok.or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## 한시적 확대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

- □ (대상증권 변동사항) 기존 국채, 통안증권, 정부보증채, 주금공MBS, 특수은행채\* 이외에 은행채\*\* 및 9개 공공기관\*\*\* 발행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,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 매 대상증권에 포함
  - \*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의 경우, 기존에 미포함되어 있었던 동 증권을 금번에 추가로 포함
  - \*\* 농업금융채, 수산금융채, 「은행법」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
  - \*\*\* 한국전력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가철도공단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한국 가스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철도공사, 예금보험공사

		4)		
	변경 전	변경 후 <sup>1)</sup>		
• 대출 적격담보증권	국채, 통안증권, 정부보증채, 신용증권, 주금공 MBS, 특수 은행채 <sup>2)</sup>	국채, 통안증권, 정부보증채, 신용증권, 주금공 MBS, 특수 은행채 <sup>2)</sup> , 은행채 <sup>3)</sup> , <u>9개 공공</u> 기관 <sup>4)</sup> 발행채권		
•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	국채, 통안증권, 정부보증채, 주금공 MBS, 특수은행채 <sup>2)</sup>	국채, 통안증권, 정부보증채, 주금공 MBS, 특수은행채 <sup>2)</sup> , 은행채 <sup>3)</sup> , 9개 공공기관 <sup>4)</sup> 발행 채권		
•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				
(RP매매)	국채, 통안증권, 정부보증채, 주금공 MBS	국채, 통안증권, 정부보증채, 주금공 MBS, 특수은행채 <sup>2)</sup> , 은행채 <sup>3)</sup> , <u>9개 공공기관<sup>4)</sup> 발행</u> 채권		

주 : 1) 금번 추가되는 증권은 밑줄로 표시

- 1) 급된 구기되는 중단는 말로고 요기 2) 산업금융채권, 중소기업금융채권, 수출입금융채권 3) 농업금융채권, 수산금융채권, 「은행법」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4) 한국전력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가철도공단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한국가스공 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철도공사, 예금보험공사
- □ (기대효과) 동 조치로 국내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 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(2022.9월말 기준)
  - o 국내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확 보하게 되는 국채,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부담 을 완화하는 한편,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□ (시행일) 2022년 11월 1일
  - o 유효기간은 2022.11.1일부터 2023.1.31일까지(3개월)

## Ⅱ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조치 유예의 주요내용

- □ (주요 내용)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\* 제공비율 인상 일정(2023.2.1일, 70%→80%)을 3개월가 유예하기로 하였음
  - \*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(차액결제)#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으로 2022.10.24일 현재 52.2조원
    - #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다음날 11시에 한은금융 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최 종적인 자금 결제
  - o 국제기준(PFMI,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)에 맞추기 위해 2025년 2월 까지 매년 10%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 적으로 유예
    -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% 인상시점은 당초 2025년 2월 에서 2025년 5월로 연기

####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(안)

(%)

	현행	'23.2월	'23.5월	'24.2월	'24.5월	'25.2월	'25.5월
변경 전	70	80	80	90	90	100	100
변경 후	⇒	70	80	80	90	90	100

- □ (기대효과)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 증권금액이 59.7조원에서 52.2조원으로 7.5조원 감소(2022.10.24일 기준)
- □ (시행일) 2022년 11월 1일

## Ⅲ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매입 실시

- □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 유 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
  - o 동 RP매입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 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통화정책기조와는 무관함
  - ① 대상 기관 : 증권사,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
  - ② 매입 규모 : 총 6조원(잔액기준) 수준\*으로 예상
    - \* 22.10.23일 기발표된 정부 조치(증권금융을 통해 증권사에 3조원 유동성 지원)와는 별도의 조치
  - ③ 금리 결정방식 : 복수금리 경쟁입찰\*
    - \* 입찰 최저금리를 준거금리 + 10~20bp 수준으로 설정
  - ④ 매입 만기 : 91일물 이내
    - 주로 단기물(14일물 등)을 활용함으로써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유동성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
  - ⑤ 매입 시기 :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실시
  - ⑥ 실시 기간 : 2023년 1월 31일까지(추후 연장 여부 검토)